금융위원회	보 도 참 고 자 료				국민행복기금
	보도	배포 시	배포	2016.9.26.(월)	

책 임 자	금융위 서민금융과장 하 주 식(02-2100-2610)	담 당 자	사무관 전동연 (02-2100-2614)
	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총괄부장 김 동 현(051-794-3400)		허태회 팀장 (051-794-3401)

제 목 : 국민행복기금 장기연체자 원금감면율 확대 관련

□ **'16.9.26일 발표**한 '**채무조정 개선 방안**' 관련하여 **일부 기사내용 중 오해의 소지**가 있어 **정확하게 내용을 전달**하고자 함

※ 일부 보도내용 : "**일반채무자, 빚 최대 90% 탕감**"

□ 우선, **원금감면율 최대 90% 적용대상**은 **금융기관이 보유한 채권이 아니라, 국민행복기금**이 **매입·관리하고 있는 채권**에 한정

○ 동 연체채권 중에서도 **15년 이상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**되어 추심을 받아 온 채무자에 대해서,

○ 국세청의 소득정보 등을 통해 **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**에 한해,

○ 행복기금 內 설치되는 '**채무조정위원회**' **심의**를 거쳐 **상환능력에 따라 최대 90%의 범위 내에서 원금감면율을 확정**하는 제도임

□ 따라서, **동 제도의 '도덕적 해이' 유발 가능성**은 **높지 않으며, 전면적·일반적 채무조정 원금감면 확대가 아님**을 분명히 밝혀 드림

□ 또한, **동 채무조정 제도 개선**으로 인해 **상환능력 부족 등을 이유**로 **채무약정을 하지 못했던 채무자**를 **약정체결로 유도하는 효과**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함(연간 약 1만명 추정)